



독일의 2010년 상반기 임금협약 체결 현황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독일의 2010년 상반기 임금교섭 및 임금협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경기변동 상황이 협약체결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가장 최근 경기지표를 살펴보면, 2010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BIP)은 전분기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2/4분기와 1/4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각각 2.3%와 0.6%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¹⁾. 이렇듯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노동시장 상황도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로 인해 2010년 11월 실업자 수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2,931,170명으로 집계되어 1992년 이래로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였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성장률은 아직까지 경제위기 이전 상황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경제위기의 여파 또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2010년 상반기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정책은 수치적 임금인상보다는 '고용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일부 업종의 경우 예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질임금이 보장되는 수준의 '적정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혹은 임금인상 요구치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과도기적인 경기회복기에 접어든 독일의 임금협상 현황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

2) Bundesagentur für Arbeit, Der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11. 2010.

■ 업종별 임금인상 요구안

2010년에 노동조합들은 지금까지 위기극복 수단으로 가장 빈번히 활용되어 왔던 조업단축(Kurzarbeit)³⁾만으로는 지속적인 고용보장 확보에 충분치 않다고 전망하고, 임금정책에서 고용보장(Beschäftigungssicherung)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시켜 왔다. 이러한 임금정책의 기조 변화에 따라 금년도 임금협상에서 노동조합의 인상요구치는 2009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⁴⁾. 특히 화학산업과 은행업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의 임금인상을 제시하기보다는 ‘적정 임금인상(angemessene Entgelterhöhung)’ 만을 요구하였고, 독일철도공사의 경우도 ‘사회적 구성을 고려한 적정 실질 임금인상(angemessene reale Entgelterhöhung mit sozialer Komponente)⁵⁾’을 요구하였다. 또한 금속업의 경우도 처음으로 구체적인 임금인상률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고용보장과 더불어 실질소득보장이 가능한 선으로만 요구하는 데 그쳤다.

그 밖의 업종들의 경우 노동조합에서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우선 연방 및 지자체 단위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임금협상에서 서비스노조(Ver.di)는 5.0%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며, (기호)식품/제과업 및 호텔숙박업 노동조합(NGG)에서는 4~5%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제지가공업의 경우에도 서비스노조에서 4.5%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며, 에너지

3) 연방노동국의 최신 노동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1월 조업단축 실시 근로자는 498,040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66%가 감소하였다. Bundesagentur für Arbeit, Der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11. 2010, S. 55.

4) 2009년 임금협상에서 노동조합의 인상요구치를 살펴보면, 독일철도공사의 경우 10%, 독일전화국 8.5%, 시설청소용역업 8.7%, 그리고 주단위 공공부문의 경우 8.0% 등으로 인상요구치가 높았으며, 그 외 업종들의 경우에도 평균 5.5%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Bispinck, R. / WSI-Tarifarchiv (2010.1), Tarifpolitischer Jahresbericht 2009, S. 3.

5) 사회적 구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임금수준이 낮은 근로자그룹의 경우 임금수준이 높은 근로자그룹에 비해 임금인상률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액보너스는 이러한 사회적 구성요소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임금수준에 상관없이 100€의 정액보너스를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실제로 임금수준이 낮은 근로자그룹의 임금이 임금수준이 높은 그룹에 비해 퍼센트 수치상 높게 상승한 효과를 갖게 된다. Bispinck, R. / WSI-Tarifarchiv(2010.10), Tarifliche Pauschal- und Einmalzahlungen, Elemente qualitativer Tarifpolitik, Nr. 69, S. 3.

〈 표 1〉 2010년 상반기 업종별 임금인상 요구안

산업 / 업종	노동조합	요 구 내 용
은행업	Ver.di	적정 임금인상
화학산업	IG BCE	적정 임금인상
독일철도공사(Deutsche Bahn AG)	Transnet	사회적 구성을 고려한 적정 실질 임금인상
에너지산업 부문	IG BCE/Ver.di	5.5 %
원예업 (바덴-뷔르템베르크)	IG BAU	6.0 %; 8,50€의 협약상 최저임금 기준
자동차(Kfz) 부문 (함부르크, 니더작센, 바덴-뷔르템베르크, 튀링겐)	IG Metall	단계적 임금인상: 4.5 %
농업	IG BAU	5.3 %
금속업	IG Metall	실질소득 보장
광유가공업 (Shell 사)	IG BCE	4.2 %
(기호)식품/제과업, 호텔숙박업	NGG	4 ~ 5 %
공공서비스 (연방 및 지자체 단위)	Ver.di	5.0 %
제지가공업	Ver.di	4.5 %

자료: WSI(2010), Tarifpolitischer Halbjahresbericht, WSI Mitteilungen 8/2010, S.420.

산업의 경우에도 광업, 화학, 에너지산업 노동조합인 IG BCE와 서비스노조는 5.5%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농업과 원예업 부문에서도 노동조합은 각각 5.3%와 6.0%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 업종별 임금협약 체결 현황

연방 및 지자체 단위 공공서비스 부문의 임금협약이 지난해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2010년도 임금협상은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먼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2010년에 가장 처음으로 선도적 임금교섭(Pilotabschluss)을 실시한 업종은 바로 금속업 부문이었다. 금속노조(IG Metall)는 기존 협약이 2010년 4월 30일자로 만료되기 이전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 단위에 대한 임금협약을 2월 18일에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선 2010년 5월 ~ 2011년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320€의 정액보너스(Pauschalzahlung)를 지급하며, 2011년 4월 1일부터는 임금을 2.7% 인상한다는 것이었다(표 2 참조). 이러한 금속업 부문의 임금협약은 2012년 3월 31일에 만료되게 된다.

한편 NRW 주의 협약당사자들은 새롭게 금속업 및 전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소위 「노동의 미래 단체협약(Tarifvertrag Zukunft in Arbeit: TV ZiA)」을 체결하였다. TV ZiA 협약에는 고용보장을 위한 새로운 협약상의 정책수단에 관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전제 요건으로 최소 12개월 동안 법정 조업단축을 실시한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⁶⁾. 보다 구체적으로, TV ZiA 협약은 고용보장을 위해 협약상으로 ① 잔존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조업단축을 최소 6개월 동안 실시가 가능토록 할 것, ② 부분적 임금보상을 통해 28시간까지의 근로시간 단축을 6개월 동안 실시가 가능토록 할 것, ③ 직업훈련생에 대한 고용승계 및 보장 등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2010년 5월 1일자로 시작되어 2012년 6월 30일에 조건 없이 만료된다.

서비스노조(Ver.di)는 2010년 2월 27일에 연방 및 지자체 단위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해 26개월의 유효기간을 갖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3단계에 걸쳐 단계적 임금인상이 실시된다. 즉 2010년 1월 1일부터 1.2%의 임금인상이 실시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는 0.6% 그리고 2011년 8월 1일부터는 임금이 추가로 0.5% 인상된다. 그 외에도 2011년 1월에는 240€의 일시금(Einmalzahlung)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2010년 4월 21일에 광업, 화학, 에너지산업 노동조합(IG BCE)은 화학산업 부문에 대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임금협약에 따라 전체 협약 유효기간 내에 근로자의 교대근무 유형별로 차등하여 각각 550/611/715€의 일시금이 지급되며, 2008/2009년의 경제위기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260€까지 일시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그 외에도 직업훈련생을 위한 고용승계 및 고용보장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었다.

자동차산업 부문에서 금속노조(IG Metall)와 사용자는 4월 28일에 바이에른과 튀링겐 주 지역의 근로자들에 대해, 그리고 5월 10일에 함부르크, 니더작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역의 근로자

6) Bispinck, R. / WSI-Tarifarchiv(2010.7), Tarifliche Regelungen zur Kurzarbeit, Elemente qualitativer Tarifpolitik, Nr. 66, S. II, III.

〈 표 2〉 2010년 상반기 업종별 임금협상 결과

협약체결일	산업 / 업종	협약체결 내용	협약만료일
2010. 2. 18	금속업 (NRW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5 ~ 2011. 3 기간에 대해 320€의 정액보너스 지급 • 2011. 4. 11 부터 2.7% 임금인상 	2012. 3. 31
2010. 2. 27	공공서비스 부문 (연방 및 지자체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1. 1 부터 1.2% 임금인상 • 2011. 1. 1 부터 0.6%, 2011. 8. 1 부터 0.5% 단계적 인상 • 2011. 1: 240€의 일시금 지급 	2012. 2. 29
2010. 3. 5	고무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12 ~ 2010. 12: 13개월 인상유보 • 2011. 1. 1 부터 2.1% 임금인상 • 2010. 4: 200€의 정액보너스 지급 • 3교대 사업장 근로자(190€) / 비3교대 사업장 근로자 (170€) 정액보너스 지급 	2011. 9. 30
2010. 4. 21	화학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월의 기간에 대한 550€의 정액보너스 지급 	2011. 3/4/5 (지역별로 상이)
2010. 5. 10	자동차 부문 (바덴-뷔르템베르크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5: 1개월 인상유보 • 2010. 6. 1 부터 0.6% 임금인상 • 2010. 12. 1 부터 1.0%, 2011. 7. 1 부터 1.9%, 2012. 1. 1 부터 0.6% 단계적 인상 	2012. 4. 30
2010. 5. 10	독일 항만사업장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6월/7월: 2개월 인상유보 • 2010. 8. 1 부터 1.0% 임금인상 • 2011. 1: 550€ 일시금 지급 	2011. 5. 31
2010. 5. 20	제지가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5 ~ 2010. 10: 6개월 인상유보 • 2010. 11. 1 부터 1.3% 임금인상 • 2011. 5. 1 부터 1.5%, 2012. 3. 12 부터 1.3% 단계적 인상 	2012. 8. 31
2010. 5. 31	호텔숙박업 (NRW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6월/7월: 2개월 인상유보 • 2010. 8. 1 부터 2.0% 임금인상 • 2011. 7. 1 부터 1.8% 단계적 인상 	2012. 4. 30
2010. 6. 10	은행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5 ~ 2010. 12 기간에 대해 300€의 정액보너스 지급 • 2011. 1. 1 부터 1.6% 임금인상 	2012. 2. 29
2010. 6. 28	에너지산업 (NRW주 GWE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7. 1 부터 2.6% 임금인상 	2011. 6. 30

자료: WSI (2010), Tarifpolitischer Halbjahresbericht, WSI Mitteilungen 8/2010, S.420.

들에 대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5월 한 달의 인상유보기간(Nullmonat) 후에 단계적으로 6월 1일부터 임금이 0.6% 인상되며, 2010년 12월 1일부터 1.0%, 2011년 7월 1일부터 1.9%,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0.6%의 임금인상이 실시된다. 그리고 협약 유효기간은 2012년 4월 30일까지이다. 그 외에도 니더작센 주 협약당사자들은 추가적으로 고용보장을 위한 협약상의 정책수단에 대해 협의하였다.

2010년 5월 20일에는 제지가공업에서 임금협약이 체결되었다. 임금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10년 5월~10월까지 6개월 동안 임금인상이 유보되며, 11월 1일부터는 1.3%, 2011년 5월 1일부터는 1.5%, 그리고 2012년 3월 12일부터는 1.3%의 단계적 임금인상이 실시된다. 이번 협약은 2012년 8월 31일에 만료된다. 또한 2010년 6월 10일에는 서비스노조와 은행업 사용자협회가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년 5월~12월의 기간에 대해 총 300€의 정액보너스가 지급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는 임금이 1.6% 인상된다.

파견근로업 부문에서는 2010년 3월 9일에 독일노총-파견근로자 임금공동체(DGB-Tarifgemeinschaft Zeitarbeit)와 사용자측인 연방파견근로협회(BZA)가 2010년 7월 1일부터 4단계에 걸쳐 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서독지역 파견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행 7.38€에서 2012년 11월 1일까지 8.19€로, 동독지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행 6.42€에서 같은 기간 동안 7.50€로 인상되게 된다. 그 외에도 각 임금그룹별로 일정 비율의 임금인상이 실시되며, 각 임금그룹별로 최하위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으로 정해지게 된다. 이러한 임금협약은 2013년 10월까지 유효하게 된다.

한편 독일노총(DGB) 소속 노동조합 이외에도 지자체 병원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마부르거 연맹(Marburger Bund)은 3주에 걸친 노동쟁의를 거쳐 2010년 6월 9일에 2010년 1~4월 기간에 대해 400€의 정액보너스 지급과 2010년 5월부터 2%의 임금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유효기간 20개월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외에도 앞으로는 응급실 및 병원 대기근무의 경우보다 더 개선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부 업종에서는 사업장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정액보너스나 일시금 지급을 연기, 삭감 또는 폐지할 수도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었다 (표 3 참조).

〈표 3〉 정액보너스, 일시금 및 임금인상에 관한 예외규정

산업 / 업종	합의내용	예외규정
화학산업	2010. 6. 30까지 550/611/715€의 일시금 지급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 일시금 지급 연기 혹은 300/333/390€로 지급액 축소 가능
독일 항만사업장	2011년 1월: 550€ 일시금 지급	기업협정을 통해 고용보장을 목적으로 이용 가능
목재 및 플라스틱 가공업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2010년 6월 1일부터 1.5% 임금인상	기업협정을 통해 임금인상의 축소, 연기 혹은 폐지가 최대 2010. 12. 31까지 가능함. 단, 고용보장이 전제조건임.
고무산업	2010년 4월: 200€ 정액보너스 지급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 경영협의회의 동의를 거쳐 정액보너스 축소, 지급연기 또는 지급취소 가능
금속업	2011년 4월 1일부터 2.7% 임금인상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 자발적인 기업 협정을 통해 최대 2개월간 임금인상 연기 가능

자료: WSI(2010), Tarifpolitischer Halbjahresbericht, WSI Mitteilungen 8/2010, S.421.

■ 임금협약 총괄 및 연간 임금인상률

2010년 상반기에 독일 노동조합총연맹(DGB) 소속 노동조합들은 독일 전체적으로 약 710만 명의 근로자(동독지역: 100만 명)들을 위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전체 근로자의 약 37%에 해당한다.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른 평균 임금인상률은 협약만료 기간까지 실시될 모든 단계적 임금인상분을 포함하여 3.2%(서독: 3.0% / 동독: 4.5%)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인상률 산정에는 지속적인 임금인상분만 포함되며, 일회성 정액보너스나 일시금 지급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0년에 실시될 임금인상만을 고려하였을 경우 임금인상률은 2.4%(서독: 2.2% / 동독: 3.0%)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체결되어 금년까지 유효한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과 금년도에 체결된 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모두 고려한 독일 전체 1,410만 명의 근로자에 대한 연간 평균 임금인상률은

2010년에 1.7%(서독: 1.7% / 동독: 2.0%)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9년의 2.6%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표 4 참조). 참고로 지난해에 체결된 임금협약에 약 7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적용을 받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체결된 임금협약에 지금까지 약 710만 명의 근로자들이 적용을 받고 있다. 한편 2010년 평균 예상 물가상승률은 약 1%로 산정되었으며, 1.7%의 임금상승률로 인해 금년도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0.7%가 된다.

연간 평균 임금인상률을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건설업과 무역업 그리고 민간서비스업의 경우 각각 2.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투자재산업과 공공부문의 경우 각각 0.9%로 최저치를 나타냈다. 그 외에도 소비재산업의 경우 1.5%, 신용 및 보험업은 1.7%, 그리고 기초원자재 및 생산재산업의 경우 2.2%의 임금인상률을 기록하였다.

〈표 4〉 2010년 업종별 평균 임금인상률

(2009년 대비: %)

산업 / 업종	서독지역	동독지역	독일전체
원예업, 농업, 임업	2.2	-	2.2
에너지업, 상수도업, 광산업	2.3	2.1	2.3
기초원자재 및 생산재산업	2.1	3.4	2.2
투자재산업	1.0	0.8	0.9
소비재산업	1.5	1.6	1.5
식품/제과업, 기호식품 및 호텔숙박업	2.3	3.9	2.4
건설업	2.4	2.7	2.5
무역업	2.5	2.4	2.5
교통 및 언론서비스업	2.3	2.6	2.3
신용 및 보험업	1.7	1.7	1.7
민간서비스업 (비영리기관)	2.4	3.2	2.5
공공부문 (지역법인 및 사회보험업)	0.8	1.0	0.9
전 체	1.7	2.0	1.7

자료: WSI(2010), Tarifpolitischer Halbjahresbericht, WSI Mitteilungen 8/2010, S.422.

■ 맺음말

2010년 상반기에 진행된 임금협상 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동조합들이 구체적으로 일정 퍼센트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보다는 고용보장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임금정책을 진행시켜 온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실질임금이 보장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인상만을 요구하는 경향이 높았다. 물론 일부 업종들의 경우 예전과 같이 구체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인상요구치 또한 예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체결된 임금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업종별로 상이하기는 하지만 임금인상 유보기간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임금인상보다는 일회성 정액보너스나 일시금 지급이 빈번히 사용되었다. 또한 기업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 임금인상이나 정액보너스 및 일시금 지급을 연기, 축소 혹은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에 관한 협정도 포함되었다. 독일 전체 2010년 평균 임금상승률은 1.7%로, 2009년의 2.6%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KLI**

참고문헌

- Bispinck, R. / WSI-Tarifarchiv(2010), Tarifpolitischer Halbjahresbericht: Eine Zwischenbilanz der Lohn- und Gehaltsrunde 2010, WSI Mitteilungen 8/2010.
- _____ (2010.10), Tarifliche Pauschal- und Einmalzahlungen: Praxis, Risiken und Nebenwirkungen, Elemente qualitativer Tarifpolitik, Nr. 69.
- _____ (2010.7), Tarifliche Regelungen zur Kurzarbeit: Übersicht über 18 Wirtschaftszweige, Elemente qualitativer Tarifpolitik, Nr. 66.
- _____ (2010.1), Tarifpolitischer Jahresbericht 2009: Tarifverdienste trotz Krise mit kräftigem Plus – Effektivverdienste erneut im Minus.

- Bundesagentur für Arbeit, Der Arbeits- und Ausbildungsmarkt in Deutschland, Monatsbericht 11. 2010, <http://statistik.arbeitsagentur.de>
- 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 (독일 연방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destatis.de>
- WSI-Tarifarchiv, Tarifrunde 2010: Forderungen für 2010, 한스-뵘클러 재단(Hans-Böckler-Stiftung) 홈페이지, <http://www.boeckler.de/16650.html>
- _____, Tarifrunde 2010: Abschlüsse, 한스-뵘클러 재단(Hans-Böckler-Stiftung) 홈페이지, <http://www.boeckler.de/16637.html>
- _____, Tarifrunde 2010: Analyse, 한스-뵘클러 재단(Hans-Böckler-Stiftung) 홈페이지, <http://www.boeckler.de/29187.html>